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 립 의 각 급 학 교 에 두 는
공 무 원 의 정 원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원 26명(6급 3명, 7급 2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56”을 “26,527”로 하고, 일반직 계 “6,213”을 “6,1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3”을 “6,08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5명(3급 또는 4급 이하 5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6,556</u>		<u>26,527</u>		-29
	.		.		.		
	.		.		.		
일반직	계		<u>6,213</u>		<u>6,184</u>		-29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13</u>		<u>6,084</u>		-2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3